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422
----------	-------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산시 문화원사의 위탁기간이 2020.10.24.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여 문화원사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0. 10. 25. ~ 2023. 10. 24. (3년)
-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144(사동)
- 규모 : 대지면적 27,915m² / 연면적 2,098m² (지상3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업무시설, 향토사박물관, 향토사연구소, 교육실, 전통초가 등
- 운영예산 : 390,000천원(2020년 본예산 기준)
- 위탁현황

수탁기관	원장	위탁기간	비고
안산문화원	이정태	2005.10.25. ~ 2008.10.24.	최초
안산문화원	김봉식	2008.10.25. ~ 2011.10.24.	재계약
안산문화원	김봉식	2011.10.25. ~ 2014.10.24.	재계약
안산문화원	김봉식	2014.10.25. ~ 2017.10.24.	재계약
안산문화원	김봉식 / 이한진	2017.10.25. ~ 2020.10.24.	재계약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신설(2015.11.23.)로 인하여 2020년은 재위탁 절차를 이행

(참고)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재위탁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기존 수탁기관 선정 가능)

□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관리)

-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원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재위탁)

-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0. 7. 15. 신설된 조항으로 2020년 문화원사 재위탁 건에는 적용 불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1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바,
 1. 향토사료의 조사 및 연구
 2. 향토문화 자료의 구입, 보존 및 전시
 3.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4.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교육
 5. 기타 향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
- 위 사업은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안산시 문화원사의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 됨

예산수반사항 : 붙임 2 (비용추계서)

수탁자 선정방식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안산문화원사는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산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 공개모집의 실효가 없기에 안산문화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위탁협약 주요내용

가. 위탁의 범위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규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규정하는 사업의 수행

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관련 법령 준수 및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의 발전적 수행을 위한 노력
- 보조금 및 재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다.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 위탁자는 문화원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가능
- 위탁자는 문화원사 운영상황을 지도 및 장부 등 서류의 검사 가능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문화원사 재위탁 추진계획(방침결재문) : 붙임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사무명 :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직영, 보조사업, 용역을 검토해 볼 수 있음. 1) 문화원사는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직영보다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하는 것이기에 공공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민간위탁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고, 3)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화원사 운영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급이 공공성을 가지며, 제7조에 따라 위탁 기간을 3년(연장가능)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사 운영은 향토문화와 관련한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직영 운영비와 더불어 민간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비용이 이중으로 집행 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원사에서는 1) 향토자료의 조사 및 연구 2) 향토문화 자료의 구입, 보존 및 전시 3)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4)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교육 5) 기타 향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하는 바 직영보다 민간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사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 등으로 측정 가능하므로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 건수 -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교육 등 실시 횟수 - 향토문화자료의 구입 건수 - 향토문화자료 전시 건수 및 전시관 관람인원수 - 향토문화 창달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안산시 문화원사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위탁의 범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포함시켜 수탁자가 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향토문화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은 다수 존재 하나 향토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많지 않음
검토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안산시 문화원사는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공급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가지며,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높임.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측정이 용이하며 협약규정을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또한 확보 가능하므로 안산시 문화원사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2]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인건비, 문화원사 시설 유지관리비, 일반 운영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안산문화원사 시설 유지관리 및 향토사 연구 등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총 소요액	420,040	420,040	420,040	위탁기간:3년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사업	인건비	324,302	324,302	324,302
	시설 유지관리비	76,724	76,724	76,724
	일반운영비	19,014	19,014	19,014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0
세 출	420,040	420,040	420,040	1,260,120
인건비	324,302	324,302	324,302	972,906
시설 유지관리비	76,724	76,724	76,724	230,172
일반운영비	19,014	19,014	19,014	57,04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20,040	420,040	420,040
	지방세수입	420,040	420,040	420,04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